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7. 15.(금) 09:37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재홍 부위원장 (1인)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7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7월 12일에 있었던 제4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2016-41-14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아래와 같이 경감한다’가 되겠습니다. 경감내용은 2016년도 편성의무 목표를 자막방송 50%, 화면해설방송 5%, 수화통역방송 2.5%로 하는 것이며, 경감 조건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시간을 일상적 시간대인 07시에서 익일 01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OBS경인방송(주)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OBS가 ‘16년 장애인방송 제작 자부담금을 ‘최대 1.5억원’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하여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1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OBS경인TV는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이고 자본잠식률이 96.4%로 고시 제7조의2 별표2에 따른 경감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심의 결과 OBS경인TV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16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자막방송 50%, 화면해설 5%, 수화 2.5%로 경감하되,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시간을 일상적 시간대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

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시각장애인 단체, 청각장애인 단체 및 OBS의 의견을 청취한 후, 편성의무 경감 수준을 심의·의결하였는 바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아울러 경영위기 방송사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위원들 중에 장애인단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위원들께서도 특별한 이의는 없으셨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OBS 경영이 매우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표>에 보니까 4년간 연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작년에 흑자로 겨우 돌아선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도 흑자가 엄청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긴축경영을 해서, 비상경영을 해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규정을 보니까 고시에 따르면 자막방송이 3.56%, 화면해설방송이 0.36%, 또 수화방송 0.18%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4년 이상 적자가 계속될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자본잠식률이 70% 이상인 경우, 그게 장애인 방송 고시 제7조의2이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OBS 같은 경우 최대치 경감이 이렇게 고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경감을 시켜 줄 경우에 범위를 어느 정도로 경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고시의 최대치까지는 가지 않았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몇 퍼센트씩 경감이 되는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최대치가 3.56%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 자본잠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자막방송 46.4%를 목표로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역시 46.4%를 다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것이 있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그만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고, OBS 역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할 때 최대 자부담금 1.5억원까지는 부담하겠다는 차원에서 경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마지막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경감할 수 있는 폭 최대치까지 배려한 것은 아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신청 자체도 거기까지 간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혹시 그렇게까지 신청하더라도 그동안에 편성된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기대하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낮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일상시간대 낮 시간대에 편성하고, 새벽시간에는 하지 말도록 한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정파시간이 원래 새벽 1시까지를 가지 않지요? 어떻게 됩니까? 편성표를 보면 OBS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벽방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4시간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정승원 시청자지원팀장

- 정파는 보통 2시 정도에 됩니다. 2시부터 4시 사이가 정파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상적 시간대로 표현한 것은 자막방송이 원래 100% 실시를 할 때 주로 이게 자막방송에 대한 문제가 새벽시간대나 이런 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경감한 이 수치들은 모두 일상적 시간대에 들어오라는 측면에서 07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OBS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다른 지역민방으로 같이 분류가 되지만 다른 지역민방은 아시다시피 자체제작률을 거의 한 자리 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40%가 넘는 자체제작률을 가지고 있고, 또 100% 자체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잘 낼 수 없는 생태적,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방의 취약매체 보호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배려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청자지원팀장께 여쭙 보겠는데 2016년 편성의무비율은 어떻게 되고 OBS에서 경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작비는 얼마에서 얼마로 줄여 주고, 편성비율은 얼마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제작비는 얼마로 하고 편성비율은 얼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고서 내용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팀장께 물어봤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서에 생략해서 그러는데...

○ 정승원 시청자지원팀장

- 의결주문에 들어 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보낸 것은 자막방송 50%, 화면해설 5%...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물어 본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한 비율은 각각 몇 %이고 제작비 규모도 우리가 의무를 부과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이고, 그런데 OBS에서 경감해 달라고 하는 비율과 금액은 얼마인데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로 하겠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OBS 같은 경우 자막방송을 하면 원래 다른 방송사와 똑같이 본다면 편성의무비율은 100%인데 자본잠식률에 따라서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감을 요청한 것이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방송 총 제작비 4.5억원을 투여할 경우에 자부담 1.5억원을 부담해서 자막 46%, 화면해설 5%, 수화 4.5%를 편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전히...

○ **고삼석 상임위원**

-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편성목표가 무조건 100%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자막을 예로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것을 설명하면 되지요. 다른 방송사는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야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자막을 기준으로 할 때 100%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류별로 다 경감해 주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봐서 모든 분들을 더 혼돈하게 해서 미안한데, 이것은 놔두고 나중에 <표> 하나만 그러서 따로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는데 <표> 세줄만 딱 있으면 될 것을... 그런데 하나 제가 의견을 달고 싶은 것은 검토 의견에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영위기 방송사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내지는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치가 있고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말이 있고, 그 뒤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비율이 몇 %이면 침해 수준이고, 몇 % 이상이면 최대한 보장이고, 그런 계량적인 기준이 있냐고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시에서 정한 의무편성 비율 내지는 경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다 고려해서 장애인방송시청자보장위원회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더 적절해 보이지, 무엇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경영위기 방송사업자 보호, 그 사정을 감안해서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최대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청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경영 여건을 고려해서 경감한다고 해야지 적절해 보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문구를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지막에 검토의견 두 번째 문단의 문구는 수정을 합시다. '경영위기 방송사업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되도록 해서 의견을 수용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는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

역방송 5%, 그렇게 부과가 되어 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지상파방송사, 방송마다 종류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OBS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지금 한 것처럼 자막방송 50%, 화면해설방송 5%, 수화통역방송 2.5%, 전체적으로 반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원래 OBS에서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비 이외에 자신들이 1.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제작비가 한 1.8억원 정도 소요되어 OBS는 3,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그 정도로 정리해 놓고,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는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통상 장애인방송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동일하게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 보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분들의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자막방송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다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의 비율은 엇비슷한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편성정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즉 자막방송 중심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면해설 같은 경우 여전히 10%대에 멈춰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용 면에서는 자막방송에 비해서 화면해설방송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방송의 복지로 부터 상당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좀 길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했는데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로 보면 방송사업자의 경영위기 상황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정 상태라는 것은 특단의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은 이상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정이 어려워졌다, 특히 자본 잠식이 되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장애인들의 방송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 자막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방송 편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이 어렵다면 이것을 경감해 주는 쪽으로, 즉 후퇴하는 쪽으로만 반드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더 고민할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정도는,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장애인방송과 관련해서는 이번 안건이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검토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화면해설 같은 기술개발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반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최대한 보장이 아니고 방송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더 강하고 최소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최대한 보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막 기준 최대 3점 몇 %까지 그것을 경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목표 46.4% 목표를 주었던 것,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방송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가능한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뜻에서 장애인의 시

청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100%에 부족하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고, 지금 좋은 의견들 다 주셨습시다만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장애인들의 시청권 보장이 좀 더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면해설방송의 경우에는 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비율이 10%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높이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항상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쪽이 소홀히 되듯이 또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완성도,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수준은 반드시 어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방송사가 비용을 더 투입해야지, 그런 것 없이 퍼센티지만 높이는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 후년에는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방송 고시도 최대 얼마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데 경감 최대치가 이제는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장애인방송이 굉장히 적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비율 정도까지는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여기 고시에는 너무 낮은 수치를 기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시도 같이 개정해서 현실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봐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2016-41-14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201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의결 내용은 제공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방통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사업자 중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2015년도 실적 공표 여부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번> 추진 경과와 <4>번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의무이행 실적평가 결과입니다. 2015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전체 145개사 중 141개사가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달성사업자는 아래 4개 사업자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장애인방송 의무제도가 '16년까지 편성비율 최종 목표 이행 과정에 있고, 지역지상파 및 SO·PP 사업자의 '15년도 편성비율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비 차등지원 및 제재방안 마련 등 장애인방송 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보도자료 배포, 방통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실적 평가 결과를 7월 15일자로 공표하고,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7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려사항으로 보면 지금 사업자들 지상파방송사업자, SO, PP가 하나씩 있지만 이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고 부주의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이번에는 특정한 제재보다는 행정지도로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역민방과 제주, 청주MBC, 또 울산중앙방송 지역 SO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고려사항에도 있지만 제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편성의무 목표가 상승됐는데 그것을 잘 인지 못해서 자막방송 100%의 96.4%, 청주문화방송도 장비 고장으로 12월 것이 누락됐다고 해서 100% 중의 99.9% 기록들이 나오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나 또는 착오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90%가 넘는 것은 사소한 실수나 또 장비 고장은 이해가 가는데 울산 중앙방송은 자막 같은 경우에 40%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SBS스포츠도 20%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밖에 내지 못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실수거나 이런 장비 고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의무편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실태를 잘 파악해서 인식이 낮다, 또 그런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SBS 스포츠 같은 경우 SBS 지상파의 자회사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낮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정지도로 그칠 게 아니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왜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울산중앙방송 같은 경우는 아주 군소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SBS 같은 큰 방송사의 자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나름대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제가 SBS스포츠를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답변은 드릴 수가 있는데 SBS스포츠가 올해에 스포츠가 편성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해제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이것을 못 했다고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올해부터 의무 자체가 해제되는데 이것을 작년 부터 해제되는 줄 알고 처음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22.9% 나오게 됐습니다. 초기에 몰랐었던 착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모니터링을 해서 안 지켜지고 있다면 반드시 1년 뒤에 실적 평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라도 '빨리 잘못되고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켜라' 하는 계도가 나가야 하지 않느냐?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소PP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실적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항상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계도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다음 연도가 또 새로 시작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그마한 군소사업자들에게는 설명회를 해서 좀 더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SBS스포츠 같은 경우 편성의무에서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배경입니까? 어떤 자회사들이 편성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방금 해제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정승원 시청자지원팀장

- 의무 지정 사업자들은 장애인방송 편성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 지정되는 사업자 중에서 장애인방송 제작비가 매출액의 1% 이상 넘기면 장애인방송 제작에 그만큼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의무 지정 사업자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시를 만들 당시에 영국에서 주로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을 많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용했던 것을 저희가 고시에서 차용했던 것입니다. SBS스포츠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방송매출액 대비해서 1%를 상회하기 때문에 매년 지정하는 데에서 SBS스포츠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SBS스포츠가 장애인방송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시 의무사업자로 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 정승원 시청자지원팀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행정지도로 하기로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화면해설방송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SBS스포츠의 화면해설은 목표치보다 훨씬 높게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장애인방송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판단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JCN울산중앙방송은 '2016년 정상 이행 중'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중간에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셨다는 취지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연말에만 점검할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에서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미리 권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만 결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전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

의는 7월 21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1분 폐회 】